

교섭요구 사실의 공고

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」 제14조3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단체교섭 요구사실을 공고합니다.

□ 교섭요구 노동조합

명 칭	대표자	요구일자
전국대학노동조합 전북대학교지부	위원장 백선기 (지부장 : 변재옥)	2019.09.23.

□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방법

-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 : 2019. 09. 24 ~ 2019. 10. 01.
- 제출방법 : 방문제출 또는 등기우편(2019. 10. 01. 18:00까지)
- 제출처 : (54896)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
전북대학교 총무과
- 교섭 요구 시 서면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
 - 노동조합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
 - 사무소가 있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
 -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

□ 참고사항

-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에 교섭요구를 하지 않은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에 참여할 수 없으며, 기타사항은 전북대학교 총무과 (063-270-4368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9. 09. 24.

전북대학교 총장

